

의안번호	2204263
의 퇴 인	김소희의원
회 답 일	2024. 10. 7.
추계번호	24B3803
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7조제2항제4호의2 신설(기금의 용도)	기금*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함(제2항) 4의2.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 제47조제2항1)에 따른 농수산물 가격 및 수급 안정 지원 * 농산물가격안정기금	의무규정

II. 미첨부 등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57조제2항제4호의2 신설(기금의 용도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기금의 용도(안 제57조제2항제4호의2 신설)

- 현행법²⁾에 따라 정부는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유통구조의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설치·운영중임

1) 이 법률안은 김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2204267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,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

2) 법 제54조(기금의 설치) 정부는 농산물(축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장에서 같다)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유통구조의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산물가격안정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
[표 1]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수입·지출계획: 2023~2025년(안)

(단위: 백만원)

	2023결산	2024계획	2025계획(안)
수입	2,188,578	2,406,270	2,597,796
지출	2,188,578	2,406,270	2,597,796

자료: 농림축산식품부, 「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(Ⅱ-1)」, 2024.9.

- 개정안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용도에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 제47조제2항³⁾에 따른 농수산물 가격 및 수급 안정 지원에 따른 지출을 추가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
-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농축수산물의 가격 변동 및 수급 불안정, 자연재해 등의 현황과 관련 지원대책 및 피해보상 방안을 예측하기 곤란하여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

3) 의안번호 제2204267호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」
 안 제47조(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의 마련) ① (생략)
 ② 정부는 기후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농축수산물의 가격 변동 및 수급 불안정, 자연재해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, 이에 대한 지원대책과 피해보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이주호	배아형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주호	02-6788-3746	progress@nabo.go.kr